

춘천지방법원 2021. 6. 23 선고 2021가단8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.

판 결 선 고 2021. 6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양구군 C 임야 4,039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2. 8. 3. 접수 제37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윤이나

별지